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52949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백승복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일

담당변호사 전상균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21. 1.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16,300,9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300,9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11. 30. C에게 ‘D신용대출’을 통하여 대출금 7,000,000원, 대출만기일 2014. 8. 29., 약정금리 연 13.61%, 연체금리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0429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7,151,802원 및 그 중 6,650,000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2021. 10. 26.을 기준으로 위 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액은 16,300,926원(원금 7,151,802원 + 지연손해금 9,149,124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와 피고, 그리고 F, G, H이 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 23.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 9. 14.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21. 4. 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원)를 말소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21. 1. 1. 기준시가는 225,040,000원(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1,940,000원 × 116㎡)이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021. 1. 1. 기준시가는 207,000,000원이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C 및 피고를 비롯한 5명의 상속인들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가 2009.경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 망인은 C에게 프랑스 정착자금으로 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0.경부터 2014.경까지 망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그 대금 115,577,842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전증여로 인한 C의 특별수익분을 고려하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C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C의 프랑스에서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한 것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C가 2008.경 프랑스로 출국한 이후 한국에 돌아온 적이 없고 피고 등 가족들과 교류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08. 12. 7. 프랑스로 출국한 이후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07,000,000원(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중 가액이 더 적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산정)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을 공제한 171,000,000원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4,200,000원($171,000,000\text{원} \times 1/5$)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합계액은 16,300,926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액 16,300,9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6,300,9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경

별지

목 록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 116㎡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 지상

연와조 세면와즙 단층 주택 57.85㎡

